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1. 소득 세액 공제요건

구분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	주민등록동거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이상 (58.12.31이전)	o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하 (98.1.1이후)	o	X
	장애인 직계비속입양자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일시퇴거 허용)
추가공제	장애인, 직계비속입양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48.12.31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종합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o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o	o	
	의료비	X	X	
	교육비	X	o	
	기부금	X	o	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단,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불입분만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가능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38호 서식)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를 경유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진단한 의사가 서명, 날인하여야함 중증환자 판단은 의사소견 사항임



2. 주택관련 소득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연말정산신청인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한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해야함
- 소득자 주소지 주택을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계약해도 공제가 가능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주택(전용 면적 85㎡(약 26평)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불입한 청약저축 불입액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택임차 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 또는 월세를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을 대출 또는 거주자로부터 빌리고 난 후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주택(전용 면적 85㎡(약 26평)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거주자 차입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주택구입 때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직장인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액 공제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분양가액 확인서류(공시가격 알리미)

3.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

구분		특별세액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4. 기타문의

